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 상생협약 합의사항 중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완료
-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건에 대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와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 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화점(5), 대형마트(3) 등의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시·도 담당자가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건 중 21건은 정상이행 중이고, 상생협약 체결 건 중 일부 미이행 사항 1건(종량제봉투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대기업이 즉시 시정했다.

또한,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20.7월부터 '23.8월 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명을 채용 하는 등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현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및 해당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생산품목·생산수량 등을 축소(3년+3년)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실 사업영역조정과	책임자	과 장	박순홍 (044-204-7930)
		담당자	사무관	장복선 (044-204-7936)
			주무관	김정민 (044-204-7938)



□ 추진목적

-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미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이행촉구 등 후속조치 실시
-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40조(사후관리)

□ 조사개요

- (기 간) 2023. 8. 14. ~ 10. 4.
- (대 상) 총 22건(사업조정 권고 3건 상생협약 19건 / 중소벤처기업부 14건 시·도 8건)
 -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 및 당사자 간 상생협약 체결로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합의가 유효한 건
- (조사자) 중소벤처기업부, 시·도 업무 담당자
- (내 용)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내용 이행 여부 점검
 - 대기업 등의 판매 품목·수량 제한, 상생협력활동 등 사업조정 권고문 또는 상생협약 합의내용 준수 여부 조사

□ 조사방법

- (사전안내) 대기업 등에게 이행실태조사 일정 및 준비 서류 등 실태조사 시행계획 안내(중소벤처기업부)
- (현장조사)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사업조정 대상 점포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확인 등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중소벤처기업부, 시·도)
- (보완조사) 실태조사에서 불이행 사항 발생 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후속조치 추진(중소벤처기업부, 시·도)

< 추진 절차 >

